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가단53908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권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4. 4. 16.

판 결 선 고 2024. 4. 30.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2. 8. 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2.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8. 24. 접수 제3684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2022. 8. 31. 접수 제2981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2022. 5. 30.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권면총액 300,000,000원의 '주식회사 C 제7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인수하고 사채원금은 2024. 5. 30. 일시상환하며 사채의 이율(발행수익률)을 연 7.037%로 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사채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D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채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사채 및 기타 이에 부수되는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22. 10. 4. 신용보증기금 부평지점의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기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그런데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2022. 8. 23.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제2.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22. 8. 31.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2 부동산'이라 하고, 1 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주문 제2.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그 가액 합계가 7,047,167,982원이고, 소극재산은 그 가액이 2022. 8. 23. 기준으로 12,842,432,709원, 2022. 8. 31. 기준으로 12,847,652,488원으로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던 점, 이 법원이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원고가 이의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99조 전단을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형주

별지